

「과학기술정책」지 발간 등 운영 지침

제정 2018. 10. 8.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1
제2조 발간목적	1
제3조 적용범위	1

제2장 학술지 편집위원회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제5조 편집위원회 역할	2
제6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2
제7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2

제3장 발간

제8조 발간	2
제9조 논문투고 및 심사	2
제10조 논문게재 순서 및 예정증명서	2
제11조 심사료 및 원고료	3
제12조 판권 및 발행인 등	3
제13조 교정쇄 및 별쇄본	3

제4장 심사

제14조 예비심사	3
제15조 심사위원의 위촉 및 역할	3
제16조 논문심사	4
제17조 논문 심사기준	4
제18조 심사결과 종합판정	4
제19조 심사결과의 처리	4
제20조 이의 제기	5

제5장 투고 및 접수

제21조 투고 자격 및 논문의 범위	5
제22조 논문의 작성 및 제출	5
제23조 논문의 저자 표기	5
제24조 논문의 접수	5
제25조 저작권재산권 양도	5

제6장 연구윤리

제26조 연구윤리	6
제27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6
제28조 연구윤리의 기준	6
제29조 연구윤리 위반 제보	7
제30조 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의결	7
제31조 연구윤리위원회 책임과 권한	7
제32조 투고자 등의 협조의무	8
제33조 소명 기회의 보장	8
제34조 무혐의에 따른 사후조치	8
제35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유지	8
제36조 제재조치	8

제7장 보칙

제37조 지침 외	8
-----------------	---

부칙

제1조 시행일	8
---------------	---

「과학기술정책」지 발간 등 운영 지침

제정 2018. 10. 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정책」(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에 관한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 목적)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지를 발간한다.

1. 과학기술 관련 연구·혁신 정책의 조사·분석 및 학술 기반 조성
2.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상호작용 및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의 창출, 교류 및 활용 촉진
3.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논리적 분석 및 진단에 기초한 정책 방향 제시
4. 국가·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학술 기반 조성

제3조(적용 범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발간 등 운영사항에 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정기간행물 기획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2장 학술지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학술지의 발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공동편집위원장 2인을 포함한 원내·외 위원 10~20인으로 구성하되 원외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편집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단, 원내 위원은 정기간행물 기획편집위원회 위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공동편집위원장은 원내·외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원외 공동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 원내 공동편집위원장은 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은 대학교수 이상의 자격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되, 학문적 연관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역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의 심의
2. 투고 논문의 접수와 적합성 판단
3.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4. 논문 게재 여부 결정
5.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
6. 기타 심사 및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 정기회의는 학술지의 발간 일정에 맞게 개최한다. 단, 공동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 회의는 공동편집위원장 2인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동편집위원장 1인의 참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공동편집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미리 지명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원외 편집위원에게는 연구원이 정하는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질적 수준과 발간지침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지닌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학술지가 발간되기 전에는 투고논문 및 투고자에 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발간

제8조(발간) 학술지는 6월 30일, 12월 30일로 연 2회 발간하고, 편집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연 2회 이내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9조(논문투고 및 심사) 투고된 논문은 이 지침을 준수하여 심사하며,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10조(논문 게재 순서 및 예정증명서) ① 논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확정된 논문의 수가 해당 호에 실릴 수 있는 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가 확정된 투고논문은 학술지의 발간 전이라도 저자의 요구가 있고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게재 예정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료 및 원고료) ① 외부 심사위원이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연구원이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소속 외 저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가 확정된 때에는 연구원이 정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판권 및 발행인 등) 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판권은 연구원이 보유하며, 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복제, 전재, 역재(譯載)할 수 없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학술지의 발행인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한다.

제13조(교정쇄 및 별쇄본) ① 교정쇄는 논문 발간 전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게 전달한다. 논문 저자는 교정쇄를 검토하여 조판상의 오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논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변경에 따른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② 별쇄본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게 20부 이내로 발송하고, 추가 인쇄분에 대해서는 저자가 추가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

제14조(예비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원고 작성 요령) 및 발간 목적과의 부합성을 검토하는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해당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 시에는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② 예비심사 심의는 편집위원회의 원내 공동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논문 투고자에게 그 사실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15조(심사위원의 위촉 및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의 책임자로 인정되는 외부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단, 심사위원 위촉 시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재직 중인 심사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 의뢰 시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으며, 투고자에게도 심사위원의 신상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③ 공동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재요청에 따른 통보된 기한 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와 심사에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제 16조(논문 심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을 받고 통보된 기한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편집위원장은 1차에 한해 심사의견을 재요청하여야 한다.
- ②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및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논문심사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마감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논문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그 사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 17조(논문 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의 독창성(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학술적 기여도 등의 참신성)
2. 연구질문(가설)의 적절성(연구주제의 탐구를 위한 연구질문 또는 연구가설의 적절성)
3. 연구방법의 적합성(연구질문 또는 가설의 결과 도출을 위한 분석·접근방법의 적합성)
4. 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5. 분석 및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6. 학술적 기여도
7. 정책적 기여도(과학기술 및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
8. 구성의 충실성

제 18조(심사결과 종합판정) 공동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판정 결과를 도출하며 논문의 심사절차 및 심사판정은 별표 제1호와 같다.

1. 초심에 따른 종합판정 결과가 '게재가'와 '수정후 게재'인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한다.
2. 초심에 따른 종합판정 결과가 '게재불가'인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불가 사실을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이유를 밝힌다.
3. 초심에 따른 종합판정 결과가 '수정후 재심'인 경우 초심 심사위원들이 해당 논문의 재심사를 진행한다.
4. 재심 판정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 및 '게재불가'의 3단계로 판정하고, 종합판정 결과가 '수정후 게재' 이상인 경우에 해당 논문을 게재한다.
5.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상이한 경우 초심 종합판정은 차하 등급, 재심 종합판정은 최하 등급을 적용한다.
6. 게재가 판정된 논문이 표절한 것이거나 중복 게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 결정을 취소하며, 제6장(연구윤리)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조(심사결과 처리) ① 편집위원회는 종합판정 결과가 '수정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받아 동일한 심사위원이 검토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종합판정 결과가 '수정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재심을 진행한다. 단,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는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제20조(이의제기) ①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다른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합리적 논거나 실증사례 등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야 하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판단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장 투고 및 접수

제21조(투고 자격 및 논문의 범위) ① 투고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투고 논문의 범위는 학술지의 발간 목적에 부합된 국문 또는 영문 학술논문으로 한다.

제22조(논문의 작성 및 제출) ①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이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②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학술지 원고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논문의 분량은 초록과 참고문헌을 모두 포함하여 본지 편집양식 기준 25매(국·영문 초록은 1/2면 이내) 이내로 한다.

③ 투고자는 연구원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논문투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연구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 간사 이메일(journal@stepi.re.kr)로 제출한다.

제23조(논문의 저자 표기) ①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게재 예정된 논문의 저자 표기는 투고 시 논문의 저자 표기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24조(논문의 접수) ①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접수일은 편집위원회 간사 이메일(journal@stepi.re.kr)에 제출된 시점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 간사는 논문이 접수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논문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접수된 논문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25조(저작권재산권 양도) ①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작권재산권은 연구원에 양도되며, 논문의 저자는 정해진 양식에 서명하여 제출한다.

② 연구원은 게재된 논문을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저작권재산권 양도는 저자 모두의 서명이 기재된 '저작권재산권 양도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의 제출을 통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연구윤리

제26조(연구윤리) 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이 지침에 따른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과,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방법·내용·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논문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자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연구 자료·방법·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것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저자가 이미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운 저작물에 다시 이용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며,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통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분량을 넘어 이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28조(연구윤리의 기준) ① 논문 투고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연구윤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 투고자는 제27조에서 제시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타인의 저작권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공개된 저작권재산권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용하고, 공개되지 않은 저작권재산권 및 자료의 경우에는 원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요청받은 사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하는 연구윤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와 관련된 선입견 또는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지침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제 임무를 수행하고,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에 적합한 전문적 역량을 가진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논문의 내용만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이외의 자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심사위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연구윤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의 심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은 전공 불일치 또는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제17조(논문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심사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정중한 표현을 통해 논문에 대한 판단 근거, 수정·보완 의견 등을 성실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5. 심사위원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내용을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29조(연구윤리 위반 제보) ① 누구든지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의혹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와 연구원은 연구윤리 위반 의혹 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30조(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의결) ① 편집위원회는 이 지침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보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책」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공동편집위원장 합의로 임명하고, 연구윤리 위반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연구윤리위원회 책임과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의혹의 당사자는 지침 준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지침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혹의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성 후 60일 이내에 조사를 거쳐 심의를 종결하여야 하며, 종결

후 10일 이내에 공동편집위원장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그에 합당한 제재조치를 건의 하여야 한다.

제32조(투고자 등의 협조의무)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된 투고자 등은 연구윤리 위원회가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무혐의에 따른 사후조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심의 결과 무혐의로 판정된 경우 의혹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사후조치 의견을 공동편집 위원장에게 적극 건의하여야 하며, 공동편집위원장은 이를 즉각 수용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35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유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편집위원회 등 조사·심의에 관련된 자는 조사 대상자 및 관련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36조(제재 조치)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이후 일정 기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게재 이후 위반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공동편집위원장은 지침 위반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논문을 삭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 공동편집위원장은 전술한 3호의 업무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 및 제재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 ② 투고자격 제한, 게재 취소 외의 경미한 제재조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37조(지침 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지침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학술지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과학기술정책」 논문투고 신청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진행 및 발간물 배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개인정보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
연락처	E-mail		휴대전화
논문명	국문		
	영문		
공동연구 여부	단독연구 <input type="checkbox"/> 공동연구 <input type="checkbox"/>	저자명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본인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과학기술정책」에 위 논문을 투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저자(대표저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책 편집위원장 귀하

「과학기술정책」 연구윤리 서약서

1. 본인은 「과학기술정책」의 연구윤리지침을 숙지하였으며,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연구윤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과학기술정책」의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저자(대표저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책 편집위원장 귀하

저작권 양도확인서

구분	「과학기술정책」 제 권 제 호	
논문명	국문	
	영문	

저자(들)는 본 원고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발행되는 「과학기술정책」에 게재가 확정되어 학술지로 발간되는 경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을 밝힙니다.

1. 본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본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저자(들)에게 본 학술지 게재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3. 본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할 계획도 없습니다.
4. 「과학기술정책」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권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귀속됩니다.
5.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허락 없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저자(들) 및 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6. 본 논문이 「과학기술정책」에 게재됨으로써 저작권권 중 공중송신권(전송권), 출판권,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행사에 관한 권리 일체의 사항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E-mail	연락처	서명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1					
공동저자 2					
공동저자 3					

과학기술정책 편집위원장 귀하

「과학기술정책」 논문심사의견서

논문명	국문				
	영문				
최종 평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심사자	성명			연락처	
	소속			심사일자	. . .

■ 세부평가표

심사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논문의 독창성					
연구질문(가설)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분석 및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구성요건의 충실성					

■ 심사의견 및 수정·보완 요구사항

과학기술정책 편집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논문게재 예정증명서

- 접수번호 :
- 저자명 :
- 논문명 :

상기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 「과학기술정책」 제○○권 ○호(발간일 20○○년 ○월 ○○일)에 게재 예정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과학기술정책 편집위원회

「과학기술정책」 논문심사 답변서

○ 논문제목 :

(※ 수정된 사항은 논문에서 밑줄로 표기)

<심사위원 1>			
평가의견	반영내용	관련 Page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과학기술정책」 논문심사 이의신청서

○ 논문제목 :

<심사위원 1>			
평가의견	이의신청내용	관련 Page	비고

논문 심사절차 및 심사판정표

